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사내대학원 설치 근거 마련 및 교육대상 확대〉
■ 백승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524호)

2026. 2.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 참고자료	14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백승아 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5. 11. 25.
3. 회부연월일 : 2025. 11.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AI·반도체 등 첨단 분야에서 석·박사급 고급 인력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기업이 현장 수요에 맞춘 교육과정을 통해 필요한 인재를 직접 양성할 수 있는 사내대학원 제도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현재 사내대학원 운영 근거는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에 두고 있는 한시 규정으로 제도 운영의 지속성에 한계가 있음. 또한 현행 제도는 사내대학원 설치 기업과 동종·유관 업종 재직자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산업 현장에 필요한 전문 역량을 조기에 확보하기 어렵고, 융복합 인재 수요가 커지는 환경에서 사내대학원을 설치한 기업이 동종·유관 업종이 아닌 다양한 중소기업 재직자에게까지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입학 대상을 확대할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사내대학원의 설치·운영 근거를 「평생교육법」에 규정하고, 재직자뿐 아니라 채용후보자와 동종·유관 업종이 아닌 중소기업 재

직자에게까지 입학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기업이 필요에 따라 다양한 산업을 융합·활용하는 융복합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32조).

Ⅲ. 검토의견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사내대학원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사내대학·대학원 등의 채용후보자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종업원까지 입학 자격을 확대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2조(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2조(사내대학·대학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① ----- ----- -----전문대학, 대학 또는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 졸업자와-- -----평생교육시설(이하 “사내대학·대학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라 한다)---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② 사내대학·대학원형태의----- ----- ----- -.
1. 해당 사업장 또는 산업단지 기업	1. -----

연합체에 속한 사업장에 고용된
종업원

2. 해당 사업장 또는 산업단지 기업
연합체에 속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다른 업체의 종업원
3. 해당 사업장 또는 산업단지 기업
연합체에 속한 사업장과 하도급
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부품·재
료 공급 등을 통하여 해당 사업장
또는 산업단지 기업연합체에 속한
사업장과 협력관계에 있는 업체의
종업원
4. 해당 사업장 또는 산업단지 기업
연합체에 속한 사업장과 동종 업
종 또는 관련 분야에 속하는 업체
의 종업원
5. 산업별 협의체의 해당 업종 또는
관련 분야에 속하는 업체의 종업
원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
생교육시설에서의 교육에 필요한 비
용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을 고용한 고용주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종업원 및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채용후보자

2. -----
-----종업원 및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채용후보자

3. -----

-----종업
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용
후보자

4. -----

-----종업원 및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채용후보자

5. -----
-----종업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용후보자

6.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사내대학·대학원형
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장이 직무
교육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업종 또는 분야
에 속하는 업체의 종업원

③ 사내대학·대학원형태의-----

-----.

④ <u>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기준·학점제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④ <u>사내대학·대학원형태의</u> ----- ----- ----- -----.
⑤ <u>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학생 보호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u>	⑤ <u>사내대학·대학원형태의</u> ----- ----- ----- ----- -----.

나. 검토의견

1) 사내대학원 근거 마련

□ 사내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평생교육법」 제32조1)에 근거하여, 기업체가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교육과정을 사내에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써,

2000년 「사회교육법」이 폐지되고, 「평생교육법」이 전부개정²⁾되면서 도입되었으며, 시간적·경제적 여유가 없는 근로자에게 직장 내에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직장인의 직무능력 향상 등을 위한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여 기업 내 우수 인력을 양성하려는 것임.

1) 「평생교육법」

제32조(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평생교육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177856), 2007.11.22. 원안가결

□ 사내대학은 「평생교육법」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종업원 수 20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삼
 성전자공과대학 등 8개의 사내대학이 설치되었으며,

사내대학원의 경우는 「평생교육법」상 근거가 없고, 첨단산업인재
 를 양성하기 위한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4조에 따라 1개
 의 사내대학원이 설치되었는데, 해당 조항은 2027년 1월 16일까지 유
 효기간³⁾을 두고 있음. 그리고, 「평생교육법」과 달리 「첨단산업 인
 재혁신 특별법」에서는 입학자격을 종업원뿐만 아니라 채용후보자
 까지 확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사내대학(원) 현황 >

구분	학교명	개교	설치기업	학위(수업연한)	학과명	입학정원
사내 대학	삼성전자공과대학	'05.3.	삼성전자	학사(3년)	반도체공학과	140
	삼성중공업공과대학 ¹⁾	'07.3.	삼성중공업	전문학사(2년)	조선해양공학과	40
	SPC식품과학대학	'11.3.	SPC그룹	전문학사(2년)	베이커리학과	26
	한화오션공과대학 ¹⁾	'13.3.	한화오션	전문학사(2년)	조선해양학과	100
	현대중공업공과대학 ¹⁾	'13.3.	현대중공업	전문학사(2년)	조선해양학과/기계전기학과	30/30
	KDB금융대학 ¹⁾	'13.3.	KDB그룹	학사(4년)	금융학과	40
	LH토지주택대학	'13.3.	LH	학사(4년)	부동산경영학과/건설기술학과	20/20
	포스코기술대학	'14.2.	포스코	전문학사(2년)	철강융합과	60
사내 대학원	LG AI대학원	'25.9.	LG	석사(3학기)	인공지능학과	30

주: 1) 삼성중공업공과대학, 한화오션공과대학, 현대중공업공과대학, KDB금융대학은 입학수요 감소로
 학생모집 잠정 중단

자료: 교육부

3) 사내대학원에 대한 근거 규정에 유효기간을 두고 있는 것은 본래 사내대학원에 관한 근거는 「평
 생교육법」에 마련되는 것이 법적체계에 적합한 것으로, 추후 「평생교육법」 개정을 통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상 근거를 두면서 유효기간을 정한 것으로 보임.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사내대학원 규정>

제4조(사내대학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운영) ① 「평생교육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첨단산업 인재양성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학원(「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이하 “사내대학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거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사내대학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교육대상, 교육비용의 부담, 운영 및 폐쇄에 대해서는 「평생교육법」 제3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내대학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사내대학원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종업원”은 “종업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용후보자”로 본다.
[법률 제20033호(2024. 1. 16.) 제4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7년 1월 16일까지 유효함**]

- ☐ 개정안은 첨단분야 등 국내 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인 석·박사급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상의 사내대학원 근거를 사내대학과 동일하게 「평생교육법」에 규정함.
- ☐ 개정안에 따라 사내대학원의 설치·운영 근거가 신설되는 경우, 기술환경과 시장수요의 변화로 인재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첨단산업 기업 맞춤형 석·박사급 인력 양성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현행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에서 이미 사내대학원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법적인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음.
- ☐ 안 부칙은 동 개정안의 시행일을 2027년 1월 17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4조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시행일을 조정하고, 사내대학원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어 「첨단산

업 인재혁신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사내대학원을 「평생교육법」에 따른 사내대학원으로 볼 수 있도록 하여 사내대학원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연속적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참고로,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4조제1항은 사내대학원을 ‘첨단산업 인재양성을 위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대상 분야를 제한하고 있는데 개정안에 의할 때 이러한 제한이 없어지게 되나, 교육부에서는 사내대학원의 수요는 최근 석박사급 인력 수요가 특히 높은 첨단산업 분야 위주일 것으로 보아 타 분야로 확장 가능성은 낮으며, 사내대학원 설치 시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한다는 점에서 무분별한 사내대학원 확장 우려는 크지 않다는 입장임.

2) 입학자격 확대

- ☐ 개정안은 사내대학·사내대학원의 입학자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용후보자”와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의 종업원”으로 확대함.
- ☐ 먼저, 채용후보자에 관하여 살펴보면, 현행 「평생교육법」은 사내대학 입학 대상에 채용후보자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개정안에 따를 경우 채용후보자는 사내대학원뿐만 아니라 사내대학 입학자격도 얻게 됨.

- 현행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에서 입학자격을 종업원뿐만 아니라 채용후보자로 확대하고 있고, 채용후보자에 대해 산업 현장에서 체득할 수 있는 지식을 선제적으로 교육한다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현행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은 입학자격을 부여받는 채용후보자를 “채용계약에 따라 계약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업원으로 채용될 예정인 사람”으로 규정⁴⁾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 사내대학 입학자격까지 부여받는 채용후보자에 대해 이를 동일하게 적용할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 아울러, 채용후보자에 대한 입학기회에 부여와 관련하여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인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4720, 김대식의원 대표발의)과 달리, 백승아 의원안에서는 현행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4조에서 규정⁵⁾한 내용을 적용하여, 해당 사업장과 하도급 관계에 있거나 협력관계에 있는 사업장의 채용후보자까지 확대하는 차이가 있음.

4)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

제3조(사내대학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교육대상) 법 제4조 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용후보자”란 채용계약에 따라 해당 계약을 한 날부터 1년 이내[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사내대학원”이라 한다)에서 학위를 수여받은 후 채용하기로 계약한 경우에는 해당 학위과정을 수료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법 제4조 제2항 전단에 따라 준용되는 「평생교육법」 제32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업원으로 채용될 예정인 사람을 말한다.

5)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4조(사내대학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운영) ② 사내대학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교육대상, 교육비용의 부담, 운영 및 폐쇄에 대해서는 「평생교육법」 제3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내대학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사내대학원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종업원”은 “종업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용후보자”로 본다.

□ 다음으로, 개정안은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과 달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⁶⁾ 중 사내대학·사내대학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장이 직무 교육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 또는 분야의 업체 종업원을 입학할 수 있도록 함.

개정안에서 입학 범위에 중소기업 재직자를 포함한 것은, 융·복합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첨단산업 분야에서 인재양성의 범위 또한 확대할 필요가 있고, 「평생교육법」상 사내대학은 종업원이 200명 이상인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으므로 사내대학·사내대학원을 설치·운영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재직자도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6)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을 영위하는 자로,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중소기업 수는 829만 8,915개(전년 대비 25만 6,189개, 3.2% 증가), 종사자 수는 1,911만 7,649명(전년 대비 16만 1,355명, 0.9% 증가)임(중소벤처기업부, 「2023년 기준 중소기업 기본통계」, 2025.8.).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있는 인재로 양성하기 위한 취지인 것으로 보임.

또한, 현행 「평생교육법」에서 입학대상을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종업원 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장과 하도급 관계에 있거나 협력 관계에 있는 종업원까지 확대⁷⁾한 취지가 주로 사내대학이 사업장 규모가 큰 대기업에 설치되고 하도급이나 협력 관계에 있는 회사들은 중소기업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상생측면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참고로, 입학범위를 다른 업종 또는 분야로 확대한 것과 관련하여 사내대학 입학생 현황을 살펴보면, 2025년 기준 협력업체 혹은 동종·유관업체 직원의 입학 인원은 전체 사내대학 중 1개 학교(포스코기술대학) 6명으로, 해당 사내대학 입학생 총원 40명의 15%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실질적으로 사내대학에 자사 직원이 아닌 타업체 직원이나 동종·유관 업체 직원이 입학하는 사례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임⁸⁾.

- 관계기관의 의견을 살펴보면, 교육부는 석·박사급 인재를 적시에 충분히 공급하기 위하여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학생 모집·선발은 학칙에 따라 운영이 가능하므로 규제 완화 시 타 분야의 선발여부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며,

7)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2120935), 법률 제19345호, 2023.4.18. 일부개정

8) 참고자료: 사내대학 입학생 현황 참조

현재 사내대학·사내대학원은 입학정원이 소규모이며, 실제 재직자를 대상으로 입학생을 선발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사내대학원의 일반대학과의 경합 가능성이 발생하는 등의 무분별한 교육 대상 확대는 어려울 것이므로 개정에 이견 없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 6788-5193

<참고자료>

□ 사내대학 입학생 현황('25.12월말 기준)

※ 최근 5년간 현황이며, 모집중단(사유: 입학수요 감소)된 학교는 모집연도까지의 현황
 - 2개교(삼성중공업공과대학, LH토지주택대학)는 미제출

구분	학과	연도	입학생 현황(명)				
			자사 직원	자사 내 타 업체 직원	협력업체 직원	동종·유관 업체 직원	자사 직원 비율(%)
삼성전자 공과대학	반도체 공학과	2021	29	0	0	0	100%
		2022	37				
		2023	112				
		2024	108				
		2025	82				
		합계	368				
SPC식품 과학대학	베이커리학과	2021	24	0	0	0	100%
		2022	20				
		2023	20				
		2024	25				
		2025	23				
		합계	112				
포스코 기술대학	철강융합과	2021	41	0	0	4	91%
		2022	39			1	98%
		2023	35			5	88%
		2024	35			0	100%
		2025	34			6	85%
		합계	184			16	92%
한화오션 공과대학	조선해양학과	2013	65	0	0	0	100%
		2014	34				
		2015	26				
KDB 금융대학	금융 학과	2013	78	0	0	0	100%
		2014	48				
		2015	11				
		2016	21				
		2017	9				
현대 중공업 공과대학	조선해양학과	2013	29	0	0	1	97%
		2014	28		0	2	93%
		2015	29		0	1	97%
		2016	27		2	1	90%
		2017	22		4	2	79%
		2018	13		0	1	93%
		2019	16		1	3	80%
	기계전기학과	2013	30	0	0	0	100%
		2014	29		0	1	97%
		2015	30		0	0	100%
		2016	23		4	2	79%
		2017	21		2	2	84%
		2018	21		1	6	75%
		2019	13		2	5	65%

자료: 교육부